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2012나1574	대여금 등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충북 청원군	
	대표자 조합장 ○○○	
원고승계참가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서울 강동구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	
	법률상 대리인 ○○○○	
피고, 항소인	◇◇◇	
	인천 서구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3449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피고는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2,99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피고는 ◆◆◆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0,192,995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 9, 14, 20 내지 25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9. 17. 준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기존 대출원리금 및 비용 등의 대환으로 2,430만 원을 기한 2001. 9. 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와 ◆◆◆는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24. □□□로부터 2,9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1,685,160원, 원금 2,430만 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다) 17,666,604원 중 3,014,840원에 충당함으로써, 원금과 비용은 모두 소멸하고 그때까지의 이자 중 14,651,764원(= 17,666,604원 - 3,014,84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로부터 2003. 12. 24. 366,000원, 2004. 3. 2. 4,012,899원, 2004. 12. 8. 79,870원 등 합계 4,458,769원을 회수하여 위 이자 14,651,764원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남은 이자는 10,192,995원(= 14,651,764원 - 4,458,769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26. 참가인에게 위 이자 10,192,995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1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이자 10,192,995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위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 위 이자 10,192,9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다룬다.

(2) 판단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원고와 같은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조합의 준조합원인바,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동일하게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제19조 제1항),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제24조), 정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제68조 제3항), 의결권과 선거권(제26조) 및 탈퇴시 지분환급청구권(제31조) 등의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하여,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제20조 제1항), 출자의무는 부

담하지 않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같은 조 제3항), 비조합원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제58조).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에 비하여 그 자격요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 ② 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가지는 비영리 행위로서의 특성이 나타나나,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도 없으므로, 준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자 등의 수익은 결국 준조합원이 아니라 지역농협 또는 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③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비조합원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로서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되고, 다만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연체이자를 제외한 약정 이자 부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3년으로 된다고 할 것인

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이자 10,192,995원(약정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것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의 최종 발생일인 2003. 12. 24.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인 2011. 5.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자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김수정

 판사 박정진